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7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4월 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별표 내용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의 종류는 조례로 정하고 각 시설의 명칭, 기능 및 위치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)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)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)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4. 2. 15. ~ 3. 6.) 결과: 붙임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은주(☎ 2133-4113)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,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및 「지방자치법」”을 “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청소년시설 사용 또는 이용””을 ““청소년시설의 사용””으로, “쓰는”을 “이용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이 조례에서 설치·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청소년활동시설: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특화시설, 유스호스텔 등
 2. 청소년복지지원시설: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
 3. 청소년복지시설: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등
 4. 기타 청소년시설: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, 청소년성문화센터 등

② 제1항 각 시설의 명칭, 기능 및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설이용자”를 “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”을 “청소년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시설의 사용 등)”을 “(청소년시설의 사용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”를 “사용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이외의”를 “외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, ““사용료””를 ““사용료등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용료”를 “시장은 사용료등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료를”을 “사용료등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별표 1의 시설 중”을 “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”으로, “사용료 100분의 10 감면”을 “100분의 10 감경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별표 1의 시설”을 “청소년시설”로, “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”을 “100분의 50 감경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별표 1의 시설”을 “청소년시설”로, “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”를 “100분의 50 감경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사용료를 납부”를 “사용료등을 납부”로, “사용료를 반환”을 “사용료등을 반환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용료”를 “사용료등”으로, “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전단 중 “별표 1의 청소년시설”을 “청소년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)”을 “(청소년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”를 각각 “운영자”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”를 “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사업 등)”을 “(시설협회의 사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"청소년시설"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·복지·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, 「<u>청소년활동진흥법</u>」, 「<u>청소년복지지원법</u>」 및 「<u>지방자치법</u>」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"<u>청소년시설 사용 또는 이용</u>"이라 함은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(설비), 강습 등 일체의 서비스를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설치) <u>이 조례에서 설치·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,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「<u>청소년 기본법</u>」, 「<u>청소년활동 진흥법</u>」, 「<u>청소년복지 지원법</u>」, 「<u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</u>」 및 「<u>지방자치법</u>」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"<u>청소년시설의 사용</u>"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용</u>하는 -----.</p> <p>제4조(설치) ① <u>이 조례에서 설치·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청소년활동시설: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특화시설, 유스호스텔 등</u></p> <p>2. <u>청소년복지지원시설: 청소년</u></p>

<신 설>

제5조(운영의 원칙)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, 시설이용자에 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

제6조(시설의 사용 등) ① 청소년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 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(생략)

상담복지센터 등

3. 청소년복지시설: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등

4. 기타 청소년시설: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, 청소년성문화센터 등

② 제1항 각 시설의 명칭, 기능 및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조(운영의 원칙) ① -----

-----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-----

-----.

제2장 청소년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

제6조(청소년시설의 사용 등) ① 사용자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
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
단체

②·③ (생략)

제8조(사용료 등) ① 운영자는 별
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
용료, 강습료 및 이용료(이하 "사
용료"라 한다)를 정하여 사용
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이 경우 서울특별시(이하 "시
장"이라 한다)은 사용료에 관한
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
한다.

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
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7.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
이용하는 경우 : 월 사용료 10
0분의 10 감면

8.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
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
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
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
하는 경우 : 월 사용료의 100
분의 50 감면

2. ---- 외 -----

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용료 등) ① -----
----- 범위-----
----- "사
용료"-----

----- 시장은 사용료-----

② -----

---- 사용료등을 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--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
----- 100분의 10
감경

8. -----

----- 청소년시설-----
----- 100분의 50 감
경

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1조(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)

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, 인사, 보수, 재산·물품관리, 안전관리, 사무의 처리 절차·기준, 지도·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.

②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·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장 서울특별시
청소년시설협회

제15조(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사업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----- 범위 -----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청소년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) ① -----

----- 범위 -----
-----.

② 운영자-----

-----.

③ 운영자-----

-----.

제4장

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

제15조(시설협회의 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범위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현 행

개 정 안

[별표 1]

<삭 제>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(제4조 관련)

구분	자치구	시 설 명	기 능	위 치
1. 청소년 활동 시설	① 청소년수련관			
	중구	시립서울청소년센터	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	을지로11길 23
	성동구	시립성동청소년센터	"	고산자로 260
	광진구	시립광진청소년센터	"	구천면로 2
	동대문구	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	"	제기로33길 25
	중랑구	시립중랑청소년센터	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	용마산로 217
	"	시립망우청소년센터	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	송림길 156
	성북구	시립성북청소년센터	"	한천로95길 7
	강북구	시립강북청소년센터	"	4.19로 74
	도봉구	시립창동청소년센터	"	노해로69길 132
	노원구	시립노원청소년센터	"	덕릉로70길 99
	은평구	시립은평청소년센터	"	백련산로4길 16
	서대문구	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	"	연희로32길 129
	마포구	시립마포청소년센터	"	월드컵로 212
	양천구	시립목동청소년센터	"	목동서로 143
	강서구	시립화곡청소년센터	"	곰달래로57길 26
	구로구	시립구로청소년센터	"	구로동로 141
	금천구	시립금천청소년센터	"	금하로30길 54
	영등포구	시립문래청소년센터	"	문래로 110
	동작구	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	"	여의대방로20길 33
	강남구	시립수서청소년센터	"	광평로144
	강동구	시립강동청소년센터	"	아리수로93길 47
	② 청소년특화시설			
	중구	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	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	퇴계로26가길 6
	용산구	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	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	한강대로 255
	영등포구	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	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	영신로 200
	동작구	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	청소년활동 활성화, 주말활동 지원	여의대방로20길 33
	은평구	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	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	통일로 684
노원구	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	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	노원로 16길 16	

	양천구	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	청소년 음악창작활동 지원	신정동 1200-6외 4
	③ 유스호스텔			
	중구	시립서울유스호스텔	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	퇴계로26가길 6
	영등포구	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	"	영신로 200
2. 청소년 복지 시설	금천구	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(여)	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	봉은사로 114길 43
	"	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(여)	"	독산로 73길 10-16
	관악구	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	"	신림로 376
	"	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	"	난곡로24가길 54
	중랑구	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(여)	"	송림길 156
	용산구	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	"	만리재로 156-1
	(이동)	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/서남)	"	강북지역이동형차량
	(이동)	시립청소년이동쉼터(동북/동남)	"	강남지역이동형차량
	은평구	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(여)	"	통일로 92길 37-6
	도봉구	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	"	도당로 17길34 외
	강북구	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	위기(가정 밖)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	한천로 140길 5-24
	중구	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	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	을지로11길 23
3. 기타 청소년 시설	광진구	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	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	구천면로 2
	동작구	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	"	여의대방로20길 33
	마포구	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	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	월드컵로 212
	강북구	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	"	삼산로 8 중랑동 10
	도봉구	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	"	노해로69길 132
	강서구	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	"	우장산로 117
	광진구	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	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	구천면로 2
	도봉구	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	"	노해로69길 132
	영등포구	시립아하!청소년성문화센터	"	영신로 200
	중랑구	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	"	면목로 23길 20
	동작구	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	"	여의대방로 20길 33
	은평구	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	"	통일로 684
강남구	시립청소년드림센터	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(성문화센터, 쉼터 등 포함)	봉은사로114길 43	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(제5조제2항 관련)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<p>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(7개소)</p> <p>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(6개소)</p>	<p>○ 제2조(정의) 제1호 설치 근거법령에 「청소년보호법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추가 반영</p> <p>－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,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근거 법령</p> <p>※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7조 :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·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·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※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: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“성교육 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○ 제2조(정의) : 일부 반영</p> <p>－(반 영)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</p> <p>－(미반영) 「청소년 보호법」</p> <p>▶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</p> <p>▶ 일부개정조례안에 기 반영된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(공공시설)을 근거로 하고자 함</p> <p>※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</p>
	<p>○ 제4조(설치) 제1항 제4호</p> <p>－ 「청소년 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서 청소년시설을 ‘활동·복지·보호시설’로 구분하고 있으므로</p> <p>－ ‘기타 청소년시설’로 정하고 있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‘청소년보호시설’로 분류</p>	<p>○ 제4조(설치) : 미반영</p> <p>－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(설치)에서 청소년시설은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임</p> <p>－ 「청소년 보호법」상 청소년보호시설은 청소년보호·재활센터로 정하고 있음</p> <p>※ 청소년 보호시설과 유사한 청소년쉼터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상 청소년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음</p> <p>※ 설치목적 (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) 인터넷·게임중독, 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(청소년성문화센터)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</p> <p>※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시설 운영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(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, 대구청소년디딤센터)</p>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청소년시설의 신설·변경·폐지 등 현황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은주(2133-4131)